

##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 사유
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	<b>지식재산관리</b> 및 기술이전 규정	직무발명외의 발명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발명”이란 「 <u>특허법</u> 」, 「 <u>실용신안법</u> 」 또는 「 <u>디자인보호법</u> 」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, 고안, 창작을 말한다.  2. ~ 12.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발명”이란 ‘ <u>특허법</u> ’, ‘ <u>실용신안법</u> ’, ‘ <u>디자인보호법</u> ’, ‘ <u>상표법</u> ’, ‘ <u>저작권법</u> ’, ‘ <u>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</u> 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, 배치설계,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, 노하우 및 기술정보 등의 <b>지식재산을 말한다.</b> 2. ~ 12. (현행유지)	“발명”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
제2장 <b>직무발명</b>	제2장 <b>지식재산 관리</b>	직무발명외의 발명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
제9조(비밀유지의 의무) 구성원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b>(조항 이동)</b>	제4장 보칙으로 이동 : ‘제1절 발명의 신고 및 승계’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
제10조(출원 등) ① (생략) ② <u>해외특허의 경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출원한다.</u> ③ ~ ④ (생략) ⑤ <u>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⑥ (생략)	제10조(출원 등) ① (생략) ② <b>(삭제)</b> ③ ~ ④ (현행유지) ⑤ <b>제1항 또는 제3항</b> 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(생략)	- 연구책임자별 특허자원관리 제도 도입 반영 - 제2항 삭제 반영

<p>(신설)</p>	<p><u>⑦ 산학협력단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특허 등에 한하여, 그 권리를 발명자에게 개인명의로 양도할 수 있다.</u></p>	<p>등록유지평가 폐지에 따라 직무발명의 개인양도 가능시점 재규정 (현 제11조의 제1항 다. 및 라.목의 양도 시점 적용)</p>
<p>제11조(비용부담) ① (생략)</p> <p>1. 대학이 부담하는 출원의 경우</p> <p>가. <u>국내특허 : 발명신고 후 출원을 하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함</u></p> <p>나. <u>해외특허 : 국내출원 후 제10조 제2항의 결정 여부에 따라 PCT 또는 EPO 출원비용을 대학이 부담하며, 개별국 진입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심의에서 결정한다.</u></p> <p>다. <u>등록 후 전문기관 평가 등급이 S, A인 경우, 5년까지 대학이 유지비용을 부담하며, 5년 이후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하거나 발명자가 양도받지 아니하는 경우 포기함.</u></p> <p>라. <u>등록 후 전문기관의 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심의 위원회를 거쳐 권리유지승인을 받은 경우 5년까지 유지비용을 부담하며,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발명자가 양도받지 아니하는 경우 포기함.</u></p>	<p>제11조(비용부담) ① (생략)</p> <p>1. 대학이 부담하는 출원의 경우</p> <p>가. <u>연구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출원 등에 소요되는 추가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고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자별 특허과제에서 집행한다.</u></p> <p>나. <u>제가목에서 비용부담이 불가한 경우,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. 단, 기타 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연구책임자별 특허재원관리 제도 도입 반영</p>
<p>2. BK 등 지식재산관련 비용 별도 관리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우</p> <p>가. <u>국내·외 출원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해당 사업에서 비용처리 함.</u></p> <p>나. <u>해외 출원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</u></p> <p>라. <u>사업 종료시 해당 특허들은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4. 주 발명자가 대학을 퇴직하였을 경우 진행 중이거나</p>	<p>2. BK 등 지식재산관련 비용 별도 관리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우</p> <p>가. <u>국내·외 출원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해당 사업에서 비용처리 한다.</u></p> <p>나. <u>해외 출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.</u></p> <p>다. <u>사업 종료시 해당 특허들은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4. 주 발명자가 대학을 퇴직하였을 경우 진행 중이거나</p>	<p>단순 문구 및 오기수정</p>

<p>나, 권리유지 중인 특허는 대학이 부담한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여 양도받을 수 있으며, 발명자가 양도받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지 여부를 판단할.</p> <p>가. 발명자가 양도받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경우 비용은 대학이 부담함.</p> <p>나. 발명자가 양도받을 경우 특허 출원에 집행된 금액으로 양도함.</p>	<p>나, 권리유지 중인 특허는 대학이 부담한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여 양도받을 수 있으며, 발명자가 양도받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.</p> <p>가. 발명자가 양도받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경우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.</p> <p>나. 발명자가 양도받을 경우 특허 출원에 집행된 금액으로 양도한다.</p>	
<p><u>② 등록 거절 직무발명 특허의 불복 심판 및 소송제기에 대한 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각각 50%씩 부담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② (삭제)</b></p> <p>③ (현행유지)</p>	<p>연구책임자별 특허자원관리 제도 도입 반영</p>
<p>제24조(발명자 보상)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배분 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</p> <p><u>② 기술이전 수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, 그 보상시기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.</u></p>	<p>제24조(발명자 보상)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배분 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</p> <p><b>②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,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이 해당 주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으로 지급한다.</b></p>	<p>신속한 발명자 보상 처리 프로세스 마련</p>
<p>(신설)</p> <p>(기존 제9조 이동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4 장 보칙</b></p> <p><b>제26조(발명자의 의무)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,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.</b></p> <p><b>제27조(비밀유지의무) 구성원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b></p>	<p>발명자의 의무 신설 및 구성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이동(기존 제9조)</p>